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현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548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4. 2.

발의자 : 김현권 · 김철민 · 안호영

윤준호 · 김병기 · 오영훈

서삼석 · 이학영 · 위성곤

신동근 · 윤호중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, 변호사, 법무사, 의사, 약사 등의 전문 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.

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,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. 이에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·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.

따라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·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(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).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·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·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한 경우

제32조제1호의3 중 “사람 또는”을 “사람,”로, “대여받은 사람”을 “대여받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·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8조의2(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·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.</u>
제8조의3(자격의 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·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8조의3(자격의 취소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·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한 경우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2조(별 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· 1의2. (생 략) 1의3.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	제32조(별 칙) ----- ----- -----. 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 1의3. ----- ----- -----

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 증을 양도·대여한 <u>사람</u> 또는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 증을 양수· <u>대여받은 사람</u>	----- ----- <u>사람</u> ,-- ----- ----- <u>대여받은 사람</u> 또 는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·양수 또는 대 여를 알선한 사람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